

수원지방법원 2021. 1. 27 선고 2019나92261(본소), 2019나92278(반소) 판결 [부동산인도
청구의 소 · 매매대금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안성시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식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남성진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A 영농조합법인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인

담당변호사 이종태

변론 종결 2021. 1. 13.

판결 선고 2021. 1. 27.

제 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. 10. 31. 선고 2018가단63387(본소),
2019가단54441(반소)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, 제1심 공동피고 B, C, D은 원고(반소피고, 이하'원고'라 한다)에게,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별지2 건축물 목록 기재 각건축물 부지 170㎡를 인도하고, 별지2 건축물 목록 기재 각 건축물을 철거하라[제1심공동피고 B, C, D에 대한 제1심 원고 패소판결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 부분이 그대로 분리·확정되었다].

나. 반소

원고는 피고에게 3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 다.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,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(분리·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, C, D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),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

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장재윤, 판사 전호재, 판사 유성현

별지1

부동산 목록

1. 경기도 안성시 대 3,587㎡
2. [건물] 경기도 안성시 외 2필지 박물관 주건축물 동
(건물의 표시)

소재지번 및 건물번호

안성시 박물관 주건축물 동

건물내역

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2층 문화 및 집회시설

지층 334.55㎡

1층 239.91㎡

2층 140.46㎡

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지층 333.33㎡

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1층 138.38㎡

— 끝 —

별지2

건축물 목록

번호	안심시 이하 소재지	구조	별지3 도면1)에 의한 특징	용도
1		컨테이너	별지3 도면의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27㎡	임시창고 (간이창고)
2		파이프 전막	별지3 도면의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 부분 56㎡	임시창고 (간이창고)
3		파이프 전막	별지3 도면의 9, 10, 11, 12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다) 부분 60㎡	임시창고 (간이창고)
4		컨테이너	별지3 도면의 13, 14, 15, 16,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라) 부분 27㎡	임시창고 (임시사무실)
			계 170㎡	